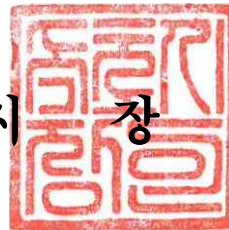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안 입법예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0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안
2. 제정사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 변경 및 분류
체계가 재정립되면서 상위법령과 불일치·기능 상실한 자치법규를 체
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국가유산법 체제전환에 따른 제명 및 조문 명칭 변경
※ 문화재보호법 → 국가유산기본법 등

나. 용어 치환

※ 문화재 / 문화유산 / 자연유산 → 국가유산

4. 자치법규안: 붙임 참조

5.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안내

- 1) 제출기간: 2024. 3. 21. ~ 2024. 4. 9.(20일간)
- 2)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3-639-2345)
- 3) 주 소: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속초시청 문화체육과)

※ 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 ☎ 033-639-22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안

제1조(「속초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1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조(「속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 중 “문화유산”을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조(「속초시립극단 설치 조례」의 개정) 속초시립극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 지정 문화재 관람료 징수구분”을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 14조”로 한다.

제4조(「속초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조(「속초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지역문화 유산”을 “지역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조(「속초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의 개정) 속초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속초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8조(「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9조(「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0조(「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 속초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② (생략)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 10. (생략)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13. (생략)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무형유산 ----- -----」 ----- 12.·13. (현행과 같음)

제2조 속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u>문화유산</u> ,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	제2조(정의) ----- -----. 1.·2. (현행과 같음) 3. ----- ----- ----- ----- 국가유산, ----- ----- -----

을 말한다.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 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가치와 지 역의 세시풍속과 유형·무형의 <u>문 화유산</u> 을 말한다.	5. ----- ----- ----- <u>국 가유산</u> -----

제3조 속초시립극단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입장료 수입)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 <u>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u> 」으로 정하는 국가 <u>지정 문화재 관람료 징수구분</u> 에 따 라 정한다. ③·④ (생 략)	제16조(입장료 수입) ① (현행과 같 음) ② ----- 「 <u>속초문 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u> 」 제14 <u>조</u>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조 속초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1호에 따른 <u>문화유산</u> , 문화예 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제2조(정의) ----- -----. 1. ----- ----- ----- <u>국가유산</u> , ----- -----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 5. (생략)	----- -----. 2. ~ 5. (현행과 같음)
--	--

제5조 속초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4. (생략) 5. <u>지역문화 유산</u> 보존·육성 6. ~ 8. (생략)	제4조(사업) ----- -----. 1. ~ 4. (현행과 같음) 5. <u>지역 국가유산</u> 보존·육성 6. ~ 8. (현행과 같음)

제6조 속초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육성 및 발전)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u>문화유산</u>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문화향수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육성 및 발전) ----- ----- ----- 국가유산----- ----- ----- -----.

제7조 속초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 4. (생 략)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u>문화재</u> 등의 위치표시 6.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5. ----- ----- <u>국가유산</u> ----- 6. (현행과 같음)
---	--

제8조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u>문화유산</u>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생 략)	제1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 ----- --. 1. (현행과 같음) 2. <u>국가유산</u>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별표 1] 재난유형별 소관 담당부서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1] 재난유형별 소관 담당부서 (제4조제2항 관련)

분야	위기유형	주관기관	강원도 주관부서	소관 담당부서	비고	분야	위기유형	주관기관	강원특별 자치도 주관부서	소관 담당부서	비고
주요 상황 매뉴얼	문화재	문화재청	문화관광 국	문화체육 과		주요 상황 매뉴얼	국가유산	국가유산 청	문화체육 국	문화체육 과	

제10조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생략) ② 대책본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 생할 때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 요 관공서 및 <u>문화재</u> 등 화재, 붕 괴 5. ~ 8. (생략)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국가유산 ----- --- 5. ~ 8. (현행과 같음)

제9조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재난유형별 소관 담당부서 (제4조제2항 관련)

분야	위기유형	주관기관	강원도 주관부서	소관 담당부서	비고
자연재난	풍수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재난대응과	
	지진 및 해일	행정안전부			
	대형화산폭발	행정안전부			
	적조	해양수산부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과	
사회재난	산불	산림청	산림환경국	공원녹지과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환경부		친환경정책과	
	대규모수질오염	환경부		친환경정책과	
	대규모해양오염	해양수산부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과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행정안전부	소방본부	재난대응과	
	인접국가방사능누출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난안전실	재난대응과	
	해양선박사고	해양수산부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과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고용노동부	경제국	지역경제과	
	다중밀집건축물붕괴 대형사고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국	건축과	
	가축질병	농림축산식품부	농정국	농업기술센터	
	감염병	보건복지부	복지보건국	보건소 보건위생정책과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복지보건국	보건소 보건위생정책과	
	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국	자치행정과	
	전력	산업통상자원부	경제국	친환경정책과	
	식용수	환경부/국토교통부	산림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육상화물운송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국	교통과	
	성폭력	여성가족부	복지보건국	교육가족지원과	
주요상황 매뉴얼	도로터널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국	건설과	
	정부중요시설	행정안전부	행정국	회계과	
	가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국	친환경정책과	
	저수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정국	건설과	
	황사	환경부	산림환경국	친환경정책과	
	산사태	산림청	산림환경국	공원녹지과	
	국가유산	국가유산청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과	
	경기장 및 공연장 사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과	

※ 비고 :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소관 담당부서를 정한다.